

예 산 총 칙

202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8,268,000	15,548,040
일반회계		502,927,000	15,087,810
특별회계		15,341,000	460,230
	기타특별회계	15,341,000	460,230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400,000	312,000
	수계기금 특별회계	1,838,000	55,14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48,000	22,440
	치수사업 특별회계	2,209,000	66,2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46,000	4,38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3,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